

보호금융상품 등록부

교보증권주식회사가 취급하는 금융상품 중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보호하는 금융상품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.

금융기관명 : 교보증권주식회사
작성기준일 : 2023년 1월 1일

○ 위탁자예수금

- 종합매매계좌

○ 저축자예수금

- 근로자증권저축계좌 (근로자장기, 근로자우대, 근로자주식)
- 비과세근로자주식저축계좌
- 장기증권저축계좌
- 증권저축계좌 (일반적립식, 유망중소기업증권저축, 비과세종합저축)

○ 수익자예수금

- 펀드계좌
- 연금저축계좌

○ 자기신용대주담보금

○ 신용공여담보금

○ 방카슈랑스 관련 보험상품의 보험금

※ 보험상품은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.
그러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보험은 그러하지 않습니다.

보험회사	보험상품
교보생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무배당 교보 바로 받는 연금보험 ▪ 무배당 교보 First 연금보험 ▪ 무배당 교보 First 저축보험 ▪ 연금저축 교보 연금보험

※ 정부, 지방자치단체, 한국은행, 금융감독원, 예금보험공사, 부보금융기관이 가입한 금융상품은 보호되지 않습니다.

※ 예금보험제도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보험 안내 책자를 참고하시거나
예금보험공사 (☎1588-0037, www.kdic.or.kr) 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.